

「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(안)」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86호, 2009. 11. 17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(영양성분 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「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(안)」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식품접객업에서 조리·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.

(1)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·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 제시

- 영양성분 표시대상

: 제과·제빵류, 아이스크림류, 햄버거, 피자,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자 하는 조리·판매식품

- 표시대상 영양성분

: 어린이 비만등과 연관성이 있는 열량, 단백질, 포화지방, 당, 나트륨 성분,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

(2) 식품접객업에서 조리·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제공방법 제시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.

※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